

대구예술대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환불에 관한 규정

(개정 2008.05.29. 교무위원회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62조에 의거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수업료 등의 반환) 이미 납부한 수업료와 입학금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사안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토록 한다.

- ①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②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(대학.교육대학.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제외한다)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.
-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“반환사유”라 한다)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.
 1. 법령에 의하여 입학(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 2.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 3.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 4. 본인의 질병.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전에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다만,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학기이후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

1. 해당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.
2. 해당 학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, 수업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.

반환사유발생일	반환금액
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	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	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	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	반환하지 아니함